

3594

서울지방검찰청

(530 - 4774)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12/A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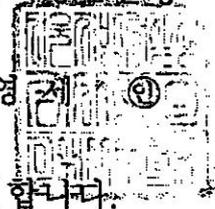
1998. 12. 29.

수신 이 승 회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제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검사 권 영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사건번호	1998년 형제 62869 호
② 고소인성명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명 별지와 같음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명	가.외자도입법위반 나.외국환관리법위반 다.증권거래법위반
⑥ 처분연월일	1998. 12. 17.
⑦ 처분요지	각 나,1-4,6-8의다.혐의없음, 각 가.공소권없음
⑧ 공소부제기이유	별첨과 같음 (불기소 이유)
⑨ 비고	

피 의 자

1. 가,나,다. 이 건 회
2. 가,나,다. 운 중 용
3. 가,나,다. 손 욱
4. 가,나,다. 이 형 도
5. 가,나. 이 대 원
6. 가,나,다. 삼성전자주식회사
7. 가,나,다. 삼성전관주식회사
8. 가,나,다. 삼성전기주식회사
9. 가,나. 삼성자동차주식회사

사 실 및 이 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검찰주사 작성의 고발 직접 수사상황보고서의 기재와 같음

수사한 결과

1. 피의자들의 외자도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 본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고발을 요하는 친고죄인 바, 동 장관의 고발이 없음

○ 공소권없음

* 고발사실 중에는 외자도입법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된 97. 2. 1 이후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신법에 의하여도 동법위반 범죄가 친고죄임을 규정한 조항은 변경이 없음

2. 피의자들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 97. 1. 30 (주)삼성자동차 및 그 대주주인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삼성전기 등과 본건 투자목적만을 위한 특수법인인 Pan Pacific Industrial Investment PLC(이하 'PP사'라 약칭) 사이에 PP사가 미화 2억8,820만 달러(한화 약 2,500억 원)을 (주)삼성자동차에 투자, 동 회사 주식 약 31%를 취득키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 같은 날 피고발인측이 재정경제원장관(당시 명칭)으로부터 외국
인투자 신고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상업은행장에게 위 계약체결사
실을 신고하여 수리된 사실,
- 97. 2. 12 위 대주주 3사와 PP사 사이에 일정한 시점에 PP사가
위 대주주 3사에 대하여 본건 투자로 자신이 보유하게되는 주식
을 일정한 금액에 매수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보유토록 하고, 위 대주주 3사는 역으로 PP사로 하여금 위 주식
을 매도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인정하는 내용
의 보충계약을 체결한 사실,
- 같은 날 PP사가 약속한 금액을 전액 투자하여 (주)삼성자동차가
필요한 증자절차를 거친 사실,
- 97. 4. 28 Put Option의 행사시점(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0년
후), 행사시 매도가액(투자원금 및 연리 약 8.8325%의 이자) 등
행사조건을 확정함과 아울러 위 Put Option의 행사가 대한민국
법률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해질 경우 위 3개 대주주사
는 대신 당시 주식매도가액 상당의, PP사가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인 외화채권을 인수키
로 하는 내용(대체채권 매수약정)을 삽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
는 3차례의 수정보충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됨

나. 본건 합작투자계약이 전체로 보아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위반인
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우선 고발인측은,
 - 피고발인측이 당시 이미 협의가 상당한 정도 진행중이었을 것으
로 추측되는 Put Option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고려할 경우 본건

합작투자계약은 실질적으로 상업차관이므로 외자도입법 제7조 이하 규정 및 외국환관리법 제21조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거부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 사실들을 은폐한 채 본계약만을 '외국인투자'계약으로 신고하여(따라서 허위로 신고하여) 수리되도록 하였는 바,

- 이는 외국환관리법상 상업차관 계약시에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하여 피고발인측은,

- 본건 합작투자계약은 계약체결 및 신고당시 적용되는 법률인 외자도입법 제2조 제3의2호 소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여 수리된 것인 만큼,
- 본건이 상업차관임을 전제로 한 고발인측의 주장은 부당하고 위법조 소정의 벌칙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 생각건대,

- 먼저, 외국인투자와 상업차관은 당시 관계법상 규제내용이 상이하므로 본건 합작투자계약이 양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 고발인측 주장과 같이 Put Option 등의 부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금리에 따른 투자원리금 회수가능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법적 성격상 소비대차인 상업차관과의 유사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 ① 본건 계약이 외자도입법 제2조 제3의2호 '외국인투자'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② 위 Put Option에 따라 조건부 회수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투자상대방인 (주)삼성자동차가 아닌 3개 대주주사에 불과하므로 상업차관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고, ③ 외국인투자 등 업무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 서기관인 참고인 문규우도 본건 계약이 당시 법령상 적법한 외국인투자였다고 진술하면서, 고발인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기록 74면의 질의 답변서는 본건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본건이 문제된 이후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상업차관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국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록 75면 '답변' 사본기재내용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 외국인투자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둘째로, 적법한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내·외국인간(규정상 정확하계는 거주자·비거주자간) 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를 면제한 외국환관리규정 제10-58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본건 합작투자계약이 외국인투자에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부를 보면,
 - 피고발인측이 Put Option 등을 정한 보충계약의 내용을 생략한 채 본계약 내용만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 외자도입법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각 제7조, 제7조의 2, 위 각 법 시행규칙 제2조(97. 1. 31자 전면개정에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별 변동이 없음) 등의 규정상 위 Option관련 내용들은 신고사항 중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 위 각 법 제7조의 4 소정의 변경신고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결국 기록 196면의 신고서 사본의 기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정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본건 외국인투자는 Put Option 등이 본 계약 및 외국인투자 신고 당시 이미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 하겠음
- 따라서, 본건 투자계약은 외국환관리규정 제10-58조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 투자”이고 그에 따라 “거주자”인 (주)삼성자동차로부터 “비거주자”인 PP사가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위 조항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므로 무허가 자본거래 행위 등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다. Put Option 인정 및 대체채권매수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계약이 독립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위반인 여부에 대한 판단

- 고발인측은 Put Option 인정 및 대체채권매수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임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발인측은,

- 먼저 Put Option의 경우 본계약이 상업차관이 아닌 외국인투자 이어서 보증할 주채무, 즉 피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증계약이 아니고,
- 대체채권매수약정의 경우 ① 보증계약 당사자간, 즉 PP사와 3개 대주주사간에 아무런 금전대차관계가 없으므로 외국환관리법 제 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가 아니며, ② 위 Put Option에 관하여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보증계약도 아니므로,
- 독립하여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로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 생각건대,

- 우선, Put Option이나 대체채권매수약정은, (주)삼성자동차가 PP 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투자금으로서 동 회사는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기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보증채무를 전제로 하는 ‘보증계약’이 될 수 없으며, 피고발인측 주장 중에 잘 정리되었듯이 ‘금전의 대차계약’도 아니라 할 것이고,
- 나아가, Put Option의 경우 앞서 본 외국환관리규정 제10-58조 제1호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본계약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며,
- 대체채권매수약정의 경우, 매수대상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 1항 소정의 증권과 법률적 성질이 유사한 증권’이므로 외국환관

리규정 제10-49조에 의한 기관투자가가 아닌 위 3개 대주주사가 이러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를 면제하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0-53조의 2에 해당되므로,

- 위 보충계약들은 독립하여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고, 따라서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소정의 '무허가자본거래'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음

라. 결 론

- 혐의없음

3. 피의자 이견희, 윤종용, 손욱, 이형도,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삼성전기 등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 피의자 (주)삼성전자, 같은 (주)삼성전관, 같은 (주)삼성전기는 각 1997. 1.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0. 각자의 이사회를 열어 기록 579-585면 각 의사록 사본기재와 같이 PP사와의 합작투자계약 및 그에 따른 보충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 위 3사는 이 이사회 결의 직후 그 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치 아니한 사실,
- 위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개 대주주사 등과 PP사 사이에 합작투자계약 및 보충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은 각 인정됨

나.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등 소정의 공시의무위반 여부 판단

○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동 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동 시행령에 근거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후 내용, 명칭이 수차 변경되어 현재는 98. 2. 20자 '상장법인공시규정'이 적용되나 본건 각 이사회결의시 적용되던 규정은 98. 6.28자 위 명칭의 규정임) 제4조, 제5조 등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상장법인에 일정한 사실 또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1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시사항은 위 규정 제5조 제5호, 제7호, 제22호, 제32호 등의 간접공시사항으로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함

○ 먼저, 위 규정 제5조 제5호, 제7호 해당 여부를 보면,

- 위 각 호의 규정은 “자본금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제5호)와 “신규 또는 기설립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제7호)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는 바,
- 우선, ‘...출자’, ‘...취득’, ‘...처분’에 ‘관한’을 ‘...출자’ 등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결의를 공시하도록 한 것이라는 해석은 그와 같

은 공시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기업비밀의 무차별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공시제도 취지상으로도 부적절하고,

- 위 각 호 규정 해석시 같은 조 제32호를 고려하여 그에 관련된 모든 결의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그 이사회 결의를 공시하여야한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는 때에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법 제186조와 결합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되는 위 각 호의 해석으로는 역시 부적절하다 할 것이어서,
- 결국 위 규정들은 확정적으로 '타법인출자' 등을 결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
- 그런데, 본건의 결의는 ① 기록 579-585면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서 보듯이 Put Option부여라는 조건부 타법인출자 또는 주식취득 내용을 담은 보충계약이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향후 동 보충계약의 체결 및 그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승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② 보충계약에 의하여 인정된 Put Option자체를 확정적인 타법인출자 또는 주식취득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제5호 또는 제7호 소정의 공시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 다음, 같은 조 제22호 해당여부를 보면,

- 위 제22호 중 해당부분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로서,

- 본건 보충계약에 의한 Put Option부여 또는 대체채권매수약정이 채무담보나 보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수차 본 바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32호 해당여부를 보면,

- 위 공시규정 제5조 제32호는 보충적으로 “제1호 내지 제31호외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생한 때”에도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는 다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피고발인측은 이러한 이유로 무효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이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능한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 독립한 공시사항을 정한 이 규정을 같은 조 다른 호의 해석을 위한 보조규정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해당규정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 위 규정은 입법기술상 공시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시, 열거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1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나 그들과 같은 정도로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공시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 본건의 경우 추후 Put Option의 행사 및 삼성전자 등 3개 대주주사의 수용 등에 의하여 타법인출자 내지 타법인주식의 취득

이 확정될 경우 위 제5호 또는 제7호에 의하여 공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굳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의 상태에서 이 규정을 들어 공시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임

다. 결 론

- 위 각 규정 소정의 공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혐의 없음

이에 각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무고판단 ; 범리오인 고소로서 혐의 인정되지 아니함)



수 신: 주임검사

제 목: 고발직접 수사상황 보고서

1. 피고발인 인적사항

1) 이건희(李建熙), 삼성전자(주) 대표이사겸 삼성그룹 회장

본적:

주거:

주민등록번호:

2) 윤종용(尹鍾龍),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본적:

주거:

주민등록번호:

3) 손욱(孫郁), 삼성전관(주) 대표이사

본적:

주거:

주민등록번호:

4) 이형도(李亨道),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본적:

주거:

주민등록번호:

5) 이대원(李大遠), 삼성자동차(주) 대표이사

본적:

주거:

주민등록번호:

6)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재지 : 수원 팔달구 매탄동 416

등록번호:

7) 삼성전관주식회사

소재지: 수원 팔달구 신동 575

등록번호:

8) 삼성전기주식회사

소재지: 수원 팔달구 매탄동 314

등록번호:

9) 삼성자동차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 25-17

등록번호:

2. 죄명

가. 외국환관리법위반

나. 외자도입법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

3. 고발인 인적사항

0 이승희 [REDACTED] 참여연대 간사

주거:

주민등록번호:

4. 범죄경력

각 해당없음

5. 범죄사실 요지

피의자 이건희는 삼성전자(주) 대표이사겸 삼성그룹 회장, 같은 윤종용은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같은 손욱은 삼성전관(주) 대표이사, 같은 이형도는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같은 이대원은 삼성자동차(주) 대표이사, 같은 삼성전자(주), 같은 삼성전관(주), 같은 삼성전기(주)는 각 삼성자동차(주)의 대주주 회사, 같은 삼성자동차(주)는 각종 자동차등의 제조,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인 바

1. 같은 이건희, 같은 윤종용, 같은 손욱, 같은 이형도, 같은 이대원은, 공모하여

1997.1.30. [REDACTED]

[REDACTED]에서, 아일랜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Pan 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이하 "PP"사로 약칭)가 삼성자동차(주)에 미화 2억 8,820만불(한화 2,500억원상당)을 신규출자하는 내용의 합작투

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만 외국인 직접투자형태를 띠고 있을 뿐 그 이면에는 위 출자후 10년째 또는 그 이전이라도 위 PP사가 출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경우 삼성전자(주), 삼성전관(주), 삼성전기(주) 등 3개 회사는 위 투자 원금에 연리 8.83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PUT OPTION(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PP사의 의결권을 위 3개 회사에 위임하며, 법률상의 제약으로 위 PUT OPTION을 행사할 수가 없을 경우 위 3개 회사가 PP사 발행의 대체증권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이는 결국 외국인의 합작투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위 3개 계열사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의 상업차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규정에 따른 수탁은행에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이면계약 내용을 숨긴 채 허위신고를 하고, 위 계약은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거래이므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채무보증은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고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 같은 삼성전자(주), 같은 삼성전관(주), 같은 삼성전기(주), 같은 삼성자등차(주)는 그 대표이사인 같은 이건희, 같은 이종용, 같은 ~~이종원~~, 같은 이형도, 같은 이대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로 계약내용을 허위신고하고 자본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
보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6. 적용법조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21조, 외자도입법 제48조, 제7조 제1항, 증권거래
법 제211조, 제186조

7. 기타 참고사항

0 외국인 투자신고는 위 PP사 대리인인 [REDACTED] 변호사가 97.1.30. 수탁은
행인 상업은행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0 위 투자금은 97.2.12. 대우자동차에 입금되어 자본금이 5,554억원에서
8,054억원으로 증가되었음

1998. 8. 14.

서울지방검찰청 형사6부

제733호 최근서 검사실

검찰주사 임 원 주

